

# 산재보험재심사재결사례

○○섬유(주) 소속 제관기사가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2요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91-378호 91. 8. 26. 취소)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신 ○ ○

주소 : 대구시 달서구

원 처 분 청 :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로자 성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섬유 주식회사

## 주 문

대구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4. 4. 25.자 “신○○”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적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신○○”(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대구남부지방노동사무소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4. 4. 25.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급여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섬유(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8. 22.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로 달서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 1.18.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청구인의 잔존장애를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12급 12호를 적용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통통과 운동제한으로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상태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애

가 장해등급 제12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7. 24. 신○○)
2. 답변서(1991. 7. 24. 원처분청)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4. 20. 신○○)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4. 25. 원처분청)
5. 산재심사관 결정서 사본(1991. 6. 27)
6.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섬유(주) 소속 제관기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1990. 8. 22.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제2요추 압박골절”로 달서정형외과의원에서 요양 가료후 1991. 1. 18. 치료 종결되었는 바 달서정형외과의원 담당 주치의 장해진단 소견 “제2요추 전방부위 압박으로 현재 골절주변에 퇴행성 병변이 보였는 바 향후 흉요부의 동통이 있을 수 있고 중노동은 어려울 것이며 흉요추부 운동범위는 전굴

145도, 후굴 160도, 좌굴 155도, 우굴 155도, 좌회선 55도 우회선 55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제2요추의 경도 압박골절로 운동제한 인정안되나 강도의 동통 때문에 노동에 어느정도 지장을 줄 수 있음”등을 종합 판단컨대 청구인의 경우 척추 압박골절로 인한 운동장애와 동통등의 신경증상이 각각 남아 있고 운동장애의 경우 운동범위가 215도로서 생리적 운동영역 270도의 1/4미만 제한되어 장해등급기준에 미달되고 신경증상의 경우 때로는 강도의 동통 때문에 노동에 어느정도 지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므로 장해등급 제12급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에 해당되나 엑스선상 명백한 압박골절이 인정되는 경우 “척추의 기형”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경증상 보다 중한 장해에 해당하는 제11급 5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주)○○섬유기계 선반공이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이 발생한 경우

(91-400호 91. 8. 26. 취소)

## 재 결 서

재심사 청구인 성명 : 정 ○ ○

주소 : 부산시 금정구

원 처 분 청 :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

원처분을 받은자 성명 : 상 동

주소 : ”

피 재 근 로 자 성 명 : 상 동

주소 : ”

소속 : 주식회사 ○○섬유기계

## 주 문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장이 1991. 6. 8.자 “정 ○○”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등급 제9급 적용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 청구취지

재심사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재심사 청구취지는 부산동래지방노동사무소

장(이하 “원처분청”이라 한다)이 1991. 6. 8. 자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에 의한 장해등급에 관한 처분을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하는데 있다.

## 이 유

청구인은 (주)○○섬유기계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 11. 21. 작업중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 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우리들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5. 13. 치료 종결되어 원처분청에 산재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던 바 원처분청은 척추의 운동이 제한되나 기질적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로 인정하여 산재법 시행령 제13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등급 제9급 14호를 적용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그 처분에 불복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관(이하 “심사관”이라 한다)에게 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심사관은 원처분청 의견과 동일하다는 이유로 기각 결정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다시 불복하면서 청구인은 추간판탈출 수술을 받았고 연부조직의 기질적 변화에 의하여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된 상태이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재심사를 청구하였다.

이상으로 보아 이건의 쟁점은 청구인의 잔존장해가 장해등급 제9급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되는 장해로 인정되느냐의 여부에 있다하겠으므로 당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이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료를 참고하였다.

1. 재심사 청구서(1991. 8. 1. 정○○)
2. 답변서(1991. 8. 7. 원처분청)
3. 장해보상 청구서 사본(1991. 5. 31. 정○○)
4. 장해급여 사정서 사본(1991. 6. 8. 원처분청)
5. 산재심사관결정서 사본(1991. 7. 26.)

6. 소견서 사본(1991. 7. 13. 노동부 자문의)

### 7. 기타 참고자료

이상의 각종 자료를 종합하여 이건을 심리하건대 청구인은 (주)○○섬유기계소속 선반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1988. 11. 21. 업무상 피재되어 상병명 “1) 요추부염좌, 2) 제4-5요추간판탈출증”으로 우리들병원 등에서 요양 가료후 1991. 5. 13. 치료 종결되었던 바 우리들병원 담당 주치의의 장해진단 소견 “디스크 자동 흡입술 및 추궁절제술 시행후 요통과 하지방사통 등으로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를 남겨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되었고, 배부연부조직의 기질적 변화로 요추부 운동범위는 전굴 40도, 후굴 10도, 좌굴 10도, 우굴 10도, 좌회선 15도, 우회선 15도임” 및 원처분청 자문의의 소견 “추간판탈출증 수술후 상태로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히 제한되었고 요추부 운동가동범위 100도임” 등으로 보아 척추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되어 요통 및 하지방사통등 제9급에 해당하는 신경장애가 남아 있는 바 운동제한의 경우 원처분청은 연부조직의 기질적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운동장애를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니 추간판탈출에 대한 추궁절제술 등의 수술적 가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이는 배부연부조직의 기질적 변화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에 기인한 운동제한은 운동장애로 인정되어야 하나 다만 본건의 경우 운동범위가 1/2 이상 제한된다 하더라도 장해등급 기준표상의 “척추의 현저한 운동장애”라 함은 광범위한 압박골절 또는 척추 고정술 등에 의하여 운동가능영역이 1/2 이상 제한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디스크 자동 흡입술 및 추궁절제술만 시행한 청구인의 경우에는 “단순한 운동장애”에 해당된다.

따라서 신경증상 보다 상위등급에 해당하는 장해등급 제8급 2호 “척추에 운동장애가 남은자”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행한 원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